

-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위탁(대행) 동의안 -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

나. 의안번호 : 제1219호

다. 제출일자 : 2016. 5. 30.

라. 회부일자 : 2016. 5. 31.

2. 제안사유

가. 市 공영주차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, 현장관리의 전문성 확보 등 주차장 위탁관리 업무체계의 개선을 위해 그동안 민간에서 운영중인 市 공영주차장 전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토록 하고,

나. 공단 대행 주차장 중 전문적 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제3자 위탁을 시행하기 위하여,

다. 「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9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사무명 : 서울시 공영주차장 대행

나. 공단 대행 주차장 : 총 160개소 18,158구획

- 공단 직영 : 54개소 12,734구획
- 제3자 위탁 : 106개소 5,424구획
 - 기동의 : 16개소 328구획(제266회 임시회,16.2.25)
 - 금회동의 : 90개소 5,096구획

공단 대행관리 주차장(160개소)									
공단 직영(54개소) 및 기동의 제3자위탁(16개소)					금회 제3자 위탁(90개소)				
연번	주차장명	형태	급지	주차면수	연번	주차장명	형태	급지	주차면수
1	개화산역	노외	4	310	1	당고개전철밑	노상	3	88
2	개화역	노외	4	399	2	당고개위	노상	3	34
3	구로디지털단지	노외	4	90	3	당고개아래	노외	3	130
4	구파발역	노외	4	401	4	석계역	노외	3	73
5	남산한옥마을	노외	2	19	5	창동역(서)	노외	3	124
6	도봉산역	노외	4	364	6	도봉산	노외	2	186
7	동대문	노외	1	1,103	7	청계1	노상	1	20
8	마포유수지	노외	2	602	8	청계2	노상	1	57
9	북정역	노외	4	367	9	청계3	노상	1	59
10	봉화산역	노외	5	165	10	청계5	노상	1	82
11	사당역	노외	2	207	11	청계6	노상	1	55
12	서린노외	노외	1	45	12	청계7	노상	1	45
13	세종로	노외	1	1,353	13	청계8	노상	1	112
14	수락산역	노외	4	159	14	을지로	노상	1	101
15	수서역	노외	4	615	15	낙원상가	노상	1	20
16	신대방역	노외	3	62	16	개봉역(중앙)	노상	2	29
17	신문로	노외	1	22	17	일원동	노외	5	21
18	신설동	노외	3	102	18	남대문 화물	노상	1	9
19	신천유수지	노외	3	222	19	남부여성발전센터	노외	3	129
20	영등포구청역	노외	3	193	20	동작대교	노상	3	50
21	용산주차빌딩	노외	2	595	21	원효대교남단	노상	1	18
22	웃우물	노외	3	79	22	일원터널	노외	4	26
23	잠실역	노외	1	355	23	평창동	노외	4	38
24	장안2동	노외	4	80	24	도봉로15길	노상	3	20

공단 대행관리 주차장(160개소)									
공단 직영(54개소) 및 기동의 제3자위탁(16개소)					금회 제3자 위탁(90개소)				
연번	주차장명	형태	급지	주차면수	연번	주차장명	형태	급지	주차면수
25	종묘	노외	1	1,418	25	마른내로	노상	1	17
26	창동역	노외	4	549	26	방화로	노상	4	62
27	천왕역	노외	4	330	27	중앙로	노상	3	55
28	천호역	노외	4	1,430	28	진흥로	노상	3	18
29	학여울역	노외	4	182	29	대림노외	노외	3	93
30	한강진역	노외	2	181	30	영남	노외	1	805
31	화랑대역	노외	5	280	31	영등포로터리	노상	2	10
32	훈련원화물대기	노외	1	100	32	해군본부앞	노상	2	24
33	대아아파트	노외	4	49	33	한강대교(남)	노상	2	24
34	광화문열린마당	노외	1	9	34	문래1동	노상	2	11
35	남대문시장	노상	1	4	35	당산고가밀	노상	3	23
36	남대문 초입	노상	1	3	36	신풍로	노상	3	99
37	남산공원 소월로	노상	2	12	37	보라매상업	노외	2	78
38	남산공원 소파로	노상	2	22	38	당산노외	노외	3	237
39	동순라길(종묘)	노상	1	9	39	대림역	노상	3	26
40	DDP동측(양쪽)	노상	1	21	40	양평동(동)	노상	4	8
41	DDP북측마장로	노상	1	4	41	압구정고가1	노상	1	21
42	모래내로	노상	3	4	42	압구정고가2	노상	1	19
43	방화대로	노상	4	9	43	영동6교밀	노상	3	39
44	서울 서부역	노상	2	6	44	잠실나루역	노상	3	30
45	서울역 서부	노외	2	33	45	동호대교(남)	노상	4	18
46	소파로케이블카앞	노상	2	3	46	독립문고가밀	노상	2	15
47	소파로 TBS앞	노상	2	4	47	동작대교	노외	4	93
48	장충단로(한남평장)	노상	3	5	48	해방촌노외	노외	3	24
49	적선동 노외	노외	1	30	49	이태원로	노상	2	40
50	중앙일보사	노상	1	6	50	용산등기소	노상	2	16
51	탑골공원	노상	1	4	51	옥수역	노외	4	41
52	광운대입구	노외	4	18	52	상봉복개	노상	2	63
53	개봉역(북)	노상	3	11	53	봉화산역(남)	노외	5	88
54	관철동	노상	1	7	54	남산케이블카	노상	2	18
55	남산소파길	노상	2	15	55	마른내길	노상	1	41
56	망원동	노외	4	13	56	남산파출소	노상	2	13
57	목동노외	노외	3	48	57	돈화문로	노상	1	53
58	미근동	노외	2	27	58	배오개길	노상	1	13
59	성북초교	노상	2	26	59	중림동 우리은행	노상	2	19
60	신사동향군회관	노상	3	28	60	동국제강	노외	1	14
61	영동대교 북단	노상	3	17	61	동부청과	노상	2	25
62	올림픽북단	노상	3	18	62	개봉역(남단)	노상	2	31

공단 대행관리 주차장(160개소)									
공단 직영(54개소) 및 기동의 제3자위탁(16개소)					금회 제3자 위탁(90개소)				
연번	주차장명	형태	급지	주차면수	연번	주차장명	형태	급지	주차면수
63	월계역	노외	4	40	63	양평고가밀	노상	2	32
64	종암1동	노외	3	21	64	부영그린	노상	2	17
65	증가로	노상	3	7	65	법안정사	노상	2	38
66	청계5가	노상	1	13	66	한국통신	노상	2	28
67	청계8가	노상	1	19	67	제방도로	노상	3	16
68	중화동	노상	4	45	68	가마산고가밀	노상	3	19
69	동대문운동장입구	노상	1	9	69	구로고가밀	노상	3	11
70	여의도공원	노상	1	64	70	파리공원	노상	3	42
					71	양천구청	노상	3	76
					72	양천경찰서	노상	3	33
					73	제물포로	노상	3	85
					74	온수역(북)	노상	4	44
					75	온수역(남)	노상	4	46
					76	목동체비지	노외	2	56
					77	가양3동	노외	3	58
					78	공항동(송정역)	노외	3	11
					79	방화우체국	노외	4	18
					80	방화역(동)	노외	4	66
					81	방화역(서)	노외	4	69
					82	대림역2	노상	3	35
					83	영보빌딩	노외	3	81
					84	구로다자달단지역(상)	노외	4	33
					85	독산동 금천교	노상	2	22
					86	여의서로	노상	1	106
					87	봉천복개3	노상	2	76
					88	가산동 금천교	노상	2	50
					89	명일동	노외	2	11
					90	일원역	노외	4	67

라. 필요성 및 기대효과

-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시 전체 공영주차장을 대행함으로써
 - 시는 최신 주차장 관리 및 운영정책개발, 신규 주차장 발굴, 재산관리 등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

- 공단은 축적된 주차관리 전문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설물/주차관제 시스템 유지관리, 민원 통합대응, 주차장 운영실태 상시 관리 감독 등 현장 세부업무를 전담이 가능함
- 또한, 공단이 대행하여 관리하는 주차장 중 전문적인 시설관리 필요성이 낮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제3자(민간, 구청, 상인회 등)에게 위탁함으로써,
 - 민간 운영 주차장은 수익개선 노력으로 주차장 이용율을 제고하고,
 - 구청 운영 주차장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으로 지역주민 생활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,
 - 상인회 운영 주차장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
- 주차장 이용 시민의 만족도 향상, 주차장 현장관리의 전문성 강화 등 市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9조

제19조(대행사업)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.

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와 청소·경비·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⑥ ~ ⑦ 생략

-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 제10조

제10조(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) ① 법 제8조 제2항 및 제13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(이하 “관리수탁자”라 한다)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
2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
3.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
4. 전통시장인근 100m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

② ~ ③ 생략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김동수)

■ 동의안의 개요

- 동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 중인 市공영주차장 전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에서 대행토록 하고, 공단 대행 주차장 중 전문적 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제3자 위탁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「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9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

※ 참고 : 「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관련 규정

제19조(대행사업)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와 청소·경비·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■ 검토의견

- '16년 6월 현재 서울시 공영주차장은 160개소로 이 중 81개소는 서울시가 직접 민간위탁으로 운영·관리하고 있으며, 79개소는 공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¹⁾받아 63개소는 공단 직영으로 16개소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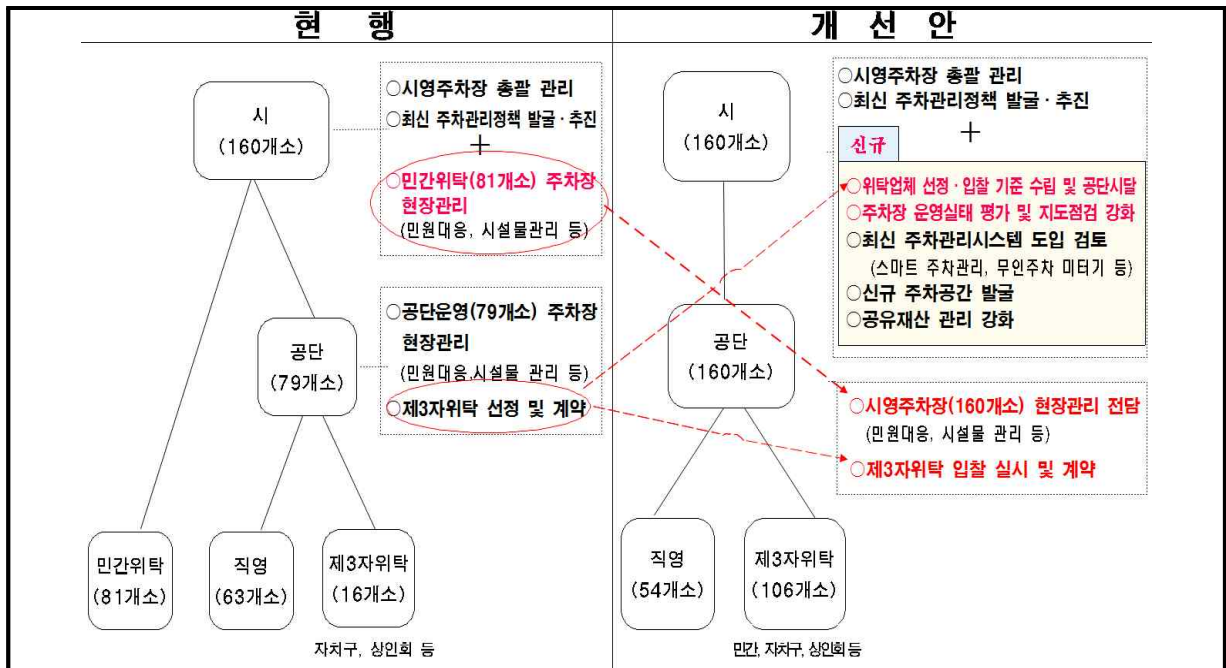
1)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 제10조(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)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(이하 “관리수탁자”라 한다)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
2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
3.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

자치구시설관리공단 및 상가연합회²⁾ 등에 제3자 위탁하고 있음

- 다만, 공단 제3자 위탁의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고 위탁한 것에 대해 '15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시의회로부터 '시정조치' 지적³⁾을 받았으며, 지난 제26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16개 공영주차장에 대한 제3자 위탁 동의를 처리⁴⁾한 바 있음
- 한편 서울시는 市공영주차장 전체를 공단에 위탁하여 공단에서 직영 또는 제3자 위탁을 통해 관리하는 내용의 “공영(시영)주차장 위탁 관리 체계 개선 계획”을 수립⁵⁾했으며, 그 후속 절차로 동 동의안을 통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

※ 참고 : 서울시 공영주차장 위탁(대행) 관리 체계 개선(안)



4. 전통시장인근 100m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

2) 관철동문화발전위원회, 남산상인연합회 및 평화시장주식회사

3) 제26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(2015.11.12)

4) 제26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(2016.2.25. 상정·의결), 본회의(2016.3.9. 상정·의결)

5) 공영(시영)주차장 위탁관리 체계 개선 계획, 주차계획과-3922(2016.3.24.)

- 서울시는 현행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81개소에 대해 담당 공무원 2명이 위탁계약·관리·지도·감독·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복수의 다른 업무도 수행하고 있어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에 대한 현장점검 등은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실정임
- 따라서 전체 市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공단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전문 인력에 의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노후화된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보수·관리토록 한다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임
- 다만, 민간위탁 81개소의 계약이 종료되는 '16년 10월 31일에 81개소 전체가 공단위탁으로 전환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에 공단 인력 규모의 적정성 및 인력 재배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신규 인력 충원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市공영주차장에 대한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